
문서번호	
제정일자	2020.05.22
개정일자	2021.12.09
개정번호	R2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개정이력

순 번	일 시	내 용	사 유	작 성
1	20.05.22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정		이관록
2	21.12.09	윤리강령 실천지침 개정	징계관련 조항 추가	이관록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실천지침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정 2020.05.22.

개정 2021.12.09.

제 1 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아스플로(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방침) 이 지침은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제3조(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01) 금품 : 금전(현금 및 상품권, 이용권 등 유가증권 포함), 선물(물품), 경조금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 02) 향응, 접대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03) 편의 : 금품수수, 향응·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의미
- 04) 이해관계인 :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 05)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 구성원, 주주, BP, 지역사회, 국가 등)
- 06) 공금 횡령 :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 07) 공금 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 08) 기물 유출 : 회사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 09) 타용도사용 :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 10) 업무태만 :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11) 근태불량 :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처리를 하는 행위
- 12) 관리감독 소홀 :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13) 불합리한 업무처리 :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또는 방조 혹은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 14) 월권행위 : 직위,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
- 15) 성희롱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제4조(교육) 경영지원팀은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 1. 구성원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주었거나,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영지원팀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에 대한 사항

은 '징계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실천지침

제6조(금품) 1. 이해관계자 특히, BP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하며,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은 제외한다. 2.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선물반송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3.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BP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단, 모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향응·접대)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대표이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

제8조(편의)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제9조(미래에 대한 보장)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고용, 취업 알선,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0조(부채의 상환 또는 보증)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이해관계인, 또는 구성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 및 대출 보증(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상황으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01)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또는 친인척(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 02) 본인 또는 친인척의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03) 본인 또는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BP나 대리점/판매점 운영을 통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04) 본인 또는 친인척이 BP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친인척 등이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12조(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 재산 취득)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콘도미니엄, 골프/헬스클럽 회원권,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을 취득할 수 없다. 비록 타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지분 수수) 이해관계자에게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

제14조(금전 등의 자산 대차)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 1. 회사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 기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비공개정보 사적 이용)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BP, 투자회사에 투자 할 수 없다. 단, "주식 등의 투자승인 신청서"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타회사 임직원 겸임)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은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경우 투자회사, 관계사의 겸임은 가능하나 겸직으로 인한 보수 발생 시에는 경영지원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9조(외부 강의)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상사(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회사인력 유출) 구성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헤드헌터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 또는 변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구성원은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성희롱, 구성원간 부당행위) 구성원은 성희롱,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 1.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법률,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불륜, 성범죄, 폭력, 사기 등)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